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- 79호

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

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30일

옥 천 군 의 회 의 장

1. **자치법규명** :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(대표 발의자 : 김외식 의원)

2. **발의의원 : 김외식 의원 외 7인**

3. **제안이유**

○ 「지방자치법」(‘22. 1. 13. 시행)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, 정책지원관의 도입에 따라 사무분장을 정하고, 인용하는 조례명과 한자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○ 인용하는 조례명 수정 (안 제1조)

○ 의사팀, 의안팀 사무분장 (안 제2조)

○ 띄어쓰기, 한자어 수정 (안 제3조)

○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(안 제4조)

5. 의견제출

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(☎043-730-3932, FAX 733-9225)

※ 의견통지내용

가.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성명(기관 · 단체일 경우 기관 ·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붙임 1.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2. 의견서 1부.

옥천군의회규칙 제 호

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 조례」 제6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」 제6조에 따라”로,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6호를 제20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의원등록, 신분관리

16. 공무원 임용·승진·교류 등 인사에 관한 사항

17.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

18.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
19. 주민조례발안청구의 접수 및 요건검토에 관한 사항

제2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.

8. 의안의 검토 및 심사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정책지원관)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조례 제정・개폐, 예산・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・조사・분석 지원
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・분석 지원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4.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・분석 지원
5. 의원의 공청회・세미나・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6.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・조사・분석 지원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옥천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 조례」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「옥천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」 제6조에 따라 ---------- 필요한 ----------.
제2조(사무분장) ① (생 략)	제2조(사무분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의원등록, 신분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	4. 의원등록, 신분관리
5. ~ 15. (생 략)	5. ~ 1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6. 공무원 임용·승진·교류 등 인사에 관한 사항
<신 설>	17.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
<신 설>	18.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<신 설>	19. 주민조례발안청구의 접수 및 요건검토에 관한 사항
16. (생 략)	20. (현행 제16호와 같음)
③ 의안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③ -----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의원 입법활동 지원	8. 의안의 검토 및 심사
9. (생 략)	9. (현행과 같음)
10. 군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정책 지원	<삭 제>
11. (생 략)	11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전문위원)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	제3조(전문위원) ----------각 호-----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	6. 그 밖에 ----------
<신 설>	제4조(정책지원관)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	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
	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	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	4.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	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	6.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

	관련된 자료의 수집·분석·조사 지원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규 칙 명 :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 칙 안	의 견